

보험가입증명서 INSURANCE CERTIFICATE

가입업체명 : 가온노인복지센터(경주)
 보험종목 : 기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번호 : F-2023-0075641 [5058272252]
 보험기간 : 2023.03.07.00:00 부터 2024.03.07.00:00 까지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54-7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업체임을 증명함.

위의 요양보호시설은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업체로써
 보험약관에서 정한 전문인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당사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전문인배상보험 센터 [www.seeins.co.kr]
 전화번호 : 02 - 2246 - 8024
 팩스번호 : 02 - 6008 - 1562
 메일주소 : cargoinsu@hanmail.net

H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조용일 · 이성재



Professional Indemnity Errors & Omissions Insurance Policy

ORIGINAL

● 기본사항

보험기간	2022.07.28.00:00 부터 2023.07.28.00:00 까지			보험청약일	2022-07-27
피보험자	업체명	가온노인복지센터(경주)		사업자번호	5058272252
	주 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54-7			
	연락처	054-745-8666	010-6780-1876	팩스번호	054-776-1876

● 보험료사항

	총보상한도액		총보험료		당회보험료		환율	
화폐	WON	115,000,000	WON	40,000	WON	40,000	WON	1
원화환산금액	WON	115,000,000	WON	40,000	WON	40,000	적용일	2022-07-27

● 목적물부호(1)

목적물소재지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54-7		
목적물구분	기타전문인배상책임 (사회복지사)	목적물사항	기타
가입물건	사회복지사	보험료산출기초수	2

약관사항

보험조건

- | | |
|-----------------------|------------------------|
| 1) 전문인정 오류 및 결손자 부담정책 | 9) 태러제외 조항 |
| 2) 석면 및 박리제 | 10) 전쟁 및 내전 제외조항 |
| 3) 결과적 손실제외 조항 | 11) 클레임 협력 조항 |
| 4) 계약상 책임배제 조항 | 12) 비용 및 비용감소 |
| 5) 밀레니엄 제외 조항 | 13) 보고기간 연장: 60일 |
| 6) 원자력 책임제외 | 14) 돌봄서비스 특별약관 (사회복지사) |
| 7) 징벌적 손해보상 제외 조항 | 15) 보험담보지역구분코드: 대한민국 |
| 8) 제재 제한 및 제외 조항 | 16) 재판관할지역코드: 대한민국 |

담보/특약	전문인종류	화폐	보상한도액			공제금액
			1인당	1사고당	총보상한도액	1청구당
Professional Indemnity Errors & Omissions Insurance Policy	사회복지사	대인		100,000,000	100,000,000	100,000
		대물		5,000,000	10,000,000	
		형사방		10,000,000	10,000,000	
		여비용				

IN WITNESS WHERE OF KB Insurance Co., Ltd. SEOUL, KOREA has caused this policy to be signed by its President or authorized representative, and countersigned on the Declarations page by a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

KB Insurance Co., Ltd

Kim, Ki Hwan
Kim Ki Hwan
President & CEO

담당지점/팀	기업영업3Unit	영업담당자	씨인스원보험컨설팅㈜
	(☎ 070-4304-7447)		(☎ 02-2246-8024)

기타전문인배상책임보험(Professional Indemnity Errors and Omissions Insurance Policy)

■ 기본사항

계약번호	F-2023-0075641		5058272252	계약일자	2023-03-06
보험기간	2023.03.07.00:00 부터 2024.03.07.00:00 까지				
피보험자	계약자	가온노인복지센터(경주)		사업자번호	5058272252
	주 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54-7			
	연락처	054-745-8666	010-6780-1876	팩스번호	054-776-1876
총보험료	234,820 원		납입방법	일시납	납입하실보험료 234,820 원

■ 배상보증사항

※ 보험가입대상 및 보상한도액

순번	거래처명	목적물구분	산출기초단위	산출기초수	피보험자
1	가온노인복지센터(경주)	전문인-재가급여	전문인수	14	재직 전문인 전원

목적물 NO	보장	화폐	1인당	1사고당	총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1	재가급여	대인배상	WON	30,000,000	30,000,000	100,000
1	재가급여	대물배상	WON		5,000,000	100,000
2	돌봄업무	대인배상	WON	150,000,000	150,000,000	-
2	돌봄업무	대물배상	WON		5,000,000	-

목적물 NO	소재지
1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54-7

■ 가입약관

- 기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 보통약관
- 소급담보일자 : 보험최초가입일
- 청약당시의 재직 전문인 수를 기준으로 연간 확정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기간 중 추가 입사한 전문인들의 업무를 보험료 추정 없이 자동 담보합니다. (또한 퇴사에 따른 환급도 없습니다)
- 보상한도액은 각 피보험자에 대해 적용 (시설별 적용)
- 돌봄SOS, 사회서비스바우처 등 기타 돌봄업무 보장

■ 보험가입 유의사항 (공통)

- 해당계약의 최저보험료는 20,000원 입니다. 보험료를 환급하는 경우에도 최저보험료 기준이 적용되어 환급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 보험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예금자 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금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예금자 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명함함에 비치된 예금자보험 안내책자를 참조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형위는 모함업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절 모집집서 위반혐의 신고센터
 - 전화 1332
 - 인터넷 www.fss.or.kr
- 사고접수, 보원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
 - 전화 1588-5656
 - 인터넷 www.hi.co.kr

H 현대해상화재보험

대표이사 조용일 · 이성재

자필서명

H 기업보험8부 보험대리점명 : 씨인스원(958183)
☎ 02-2246-8024 FAX 0507-773-3123
H.P 010-6832-8024
콜센터 1588-5656
www.hi.co.kr

대한민국정부
인자세 100원
증서세무서장
주남승인
2008년 7호

씨인스원(958183)
문서번호 : GI-09-239

전문인 보상보험

일반조항

스케줄상 기명 피보험자인 개인, 조합, 혹은 회사(이하 "피보험자"라 칭함)는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칭함)에 스케줄상의 날짜 및 기타 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며 계약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상의 청약을 하였으며 이러한 청약사항은 스케줄에 명기된 보험료를 고려하여 이뤄진 것으로 봅니다.

보상조항

회사는 증권의 보험조건, 제한조건, 면책사항 및 일반조건을 전제로 스케줄에 언급된 피보험자의 사업에 대하여 다음의 피보험자의 과실, 오기 및 탈루로 기인한 사고에 대해 보험기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의 결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동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손해액 및 기타 비용을 보상합니다.

- (a) 피보험자
- (b) 피보험자의 임.직원
- (c) 기타 피보험자를 위해 업무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개인, 사람들, 조합 또는 회사

비 용

회사는 본 보험 증권에서 담보되는 사고를 조사, 방어, 합의하는데 발생한 비용도 보상합니다.

회사의 배상책임한도

회사의 보상한도액은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에게 제기된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스케줄에 언급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사, 방어, 합의 비용포함)

자기부담액

회사는 손해배상청구의 조사, 방어 합의를 포함하여 각각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스케줄에 언급된 자기부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책임을 집니다.

이 번역본은 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한 '손해배상청구'한 동일 사건 및 원인으로 야기된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의미합니다.

만일 본 조항에 해당하는 비용을 회사가 부담할 경우 피보험자는 자기부담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법정 상속인

피보험자의 사망시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에 대하여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적 상속인에게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증권외 보험조건, 일반조건, 면책조항을 적용하여 법적 대항인에게 보상합니다.

피보험자의 임 직원 보상

피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시, 회사는 피보험자의 임 직원에게 피보험자에게와 동일하게 보상을 합니다. 다만 이 경우 동 임 직원에 대해 피보험자와 동일하게 증권상의 보험조건, 일반조건 및 면책사항을 적용합니다.

일반조항

사고통지

1. 피보험자는 동 보험증권하에서 보상받는 것에 우선하여, 다음사항에 대해 회사에 즉각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 피보험자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동 보험증권하에서 보상 가능한 피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통지를 접수한 경우또한 상기의 경우 회사 요청에 따라 피보험자는 그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손해처리

2. 피보험자는 모든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방어 혹은 청산할 권리를 갖는 회사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 보험증권하에서 모든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거나 합의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비용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와 회사의 상호 동의로 선임한 변호사가 법률적 방어를 결정할 경우가 아니면 피보험자는 법률적 진행으로 대응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 번역본은 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회사의 합의, 보상 혹은 법률적 진행에 대해 피보험자가 거부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및 비용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는 회사가 합의 또는 보상하는 것과 같이 해당 손해배상청구에 대항하거나 법률적 진행을 하는데 있어 피보험자의 위험으로 처리할 권리를 갖습니다.

피보험자 임 직원에 대한 대위권 포기

3. 본 보험증권하에서 보험금이 지급되고 이에 따라 피보험자의 대위권을 회사가 계승한 경우라도 피보험자 임직원의 부정, 사기, 범죄 또는 악의적 행위, 악의적 탈루로 인한 손해가 아닌 경우 피보험자의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 행사를 포기합니다.
피보험자는 회사가 합리적으로 요청한 경우 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모든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통지사항

4.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예상되는 상황을 인지한 경우 즉시 그 상황에 대해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동 상황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 동 통지는 본 보험상 보험기간 내에 행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험료 정산

5. 본 보험의 보험료가 예상자료로 산출된 경우 피보험자는 정확한 보험료 산정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나 회사의 대리인이 동 자료를 검토하고자 할 경우 언제든지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는 회사가 요청할 경우 보험기간 만료후 한달 이내에 동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회사가 산정한 보험료가 스케줄에 명기된 최소보험료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보험료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의 해지

6. 본보험은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30 일의 사전통지로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조항 5 에 따라 보험료가 정산되며, 보험료가 예상자료로 산정된 경우가 아니면, 경과 보험료는 일할 계산방식으로 산정합니다. 이와 같은 통지가 피보험자의 최근 주소에 등기 우편으로 송부된 경우 피보험자가 정히 접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의무조항

7. 피보험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에 관한 보험증권상의 보험조건, 조항, 및 일반조건은 회사의 배상책임에 우선하는 사항입니다..

사기적 보험사고

8. 보험금이나 기타 사고사항에 관련하여 오류 또는 사기에 대해 피보험자가 알고도 보험 사고로 처리한 경우 본보험은 무효이며, 이와 관련한 모든 손해배상청구는 실효됩니다.

면책사항

회사는 다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배상책임

(a) 피보험자가 고용인으로서 피고용인에 대해 부담하게 되는 계약사항 또는 의무의 위반으로 인해 고용관계에 따라 야기된 상해, 사망, 질병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토지 건물등

(b) 피보험자에 의해 또는 대리하여 소유, 점유 또는 사용된 토지, 건물, 항공기, 선박 또는 동력운송시설로 야기된 손해배상청구

부정행위

(c)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악의 또는 불법행위나 불법적 탈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명예훼손

(d) 명백한 명예훼손 또는 근거 없는 비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침해

(e) 명백한 저작권, 특허권, 디자인, 상표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계약상의 배상책임

(f) 피보험자의 명시적 보증, 동의 또는 보장하에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배상책임으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단, 명시적 합의 또는 보장이 없었

이 번역본은 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을지라도 피보험자가 부담하였어야 할 손해는 제외.

생산물

(g) 피보험자나 피보험자 관련회사, 하청자에 의해 판매, 공급, 수리, 변형, 제작, 설치 및 유지 보수되는 생산물에 관련한 또는 생산물로인해 야기된 손해배상청구

신체상해/재산손해

(h) 손해가 피보험자 전문 영역에 있어 태만한 자문, 디자인, 사양등 또는 전문영역 의무 위반으로 기인된 경우가 아니면 신체상해, 질병 사망 또는 재산손해로 야기된 손해 배상청구

피보험자의 지불 불능/파산

(i) 피보험자의 지불 불능이나 파산에 직 간접적으로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오염사고

(j) 여하한 종류의 오염으로 인해 직 간접적으로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타보험

(k) 타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타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의 손해 청구

고지사항

(l) 타보험에 고지여부를 불문하고 보험가입시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거나, 합리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었어야 하는 상황으로 기인한 손해 청구

방사능위험, 핵물질 폭발

(m) 다음으로 야기된 직 간접 손해배상

- 핵연료 또는 핵물질 연소에 따른 핵 폐기물로 인한 방사능 물질의 누출, 오염
- 핵물질의 폭발로 인한 방사능, 독극물 및 이와 관련한 위험 물질

법률행위

(n) 스케줄에 명기된 국가이외의 법정에서 진행되는 법률행위나 또는 상호협정이나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인해 그런 지역 내에서 외국의 판결을 실시할 경우,

징벌적손해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은 벌금, 벌과금, 징벌적 또는 본보기로 부과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원자력 배상책임 보장제외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방사선 동위원소의 사용이외에 피보험자가 원자력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중에 위험한 핵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의>

「핵물질」이란 본래의 핵물질, 특수 핵물질, 또는 부산물을 말합니다.

「본래의 핵물질, 특수물질, 부산물」이란 대한민국 원자력법의 정의 또는 이의 수정된 모든 법률에 규정한 의미를 말합니다.

「소모된 연료」는 고체 액체를 불문하고 핵원자로 속에서 방사선으로 사용되었거나 방사선에 노출되어진 연료를 말합니다.

「폐물」이란 (1) 부산물을 포함하며

(2) 하기의 (ㄱ)란 및 (ㄴ)란의 원자력 시설의 정의에 포함된 모든 원자력 시설을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 운용될 때 생기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소모된 연료나 폐물 또는 원자력 시설로부터 방출되거나 소산된 물질을 제외한 부산물을 말합니다.

「원자력 시설」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ㄱ) 모든 원자로

(ㄴ) 하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치나 설비

(1) 동위원소나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분리

(2) 소모된 연료의 이용이나 가공처리

(3) 폐물의 취급, 가공처리 및 포장

(ㄷ) 특수한 핵물질을 가공 처리하거나, 제조하거나, 혼합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장치 및 설비

단, 이러한 장치 및 설비는 이들이 소재하는 구내에서 피보험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특수한 핵물질의 총량이 플루토늄 25 그램이나 우라늄 233 또는 이들의 결합, 그리고 우라늄 235가 250그램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저장된 것을 말합니다.

(ㄹ) 폐기물의 처분이나 저장을 위해 사용되거나 준비된 장소나 건물 및 구축물, 웅덩이, 굴

그리고 위의 장치나 설비가 소재하고 있는 부지와, 이 부지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작업,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건물은 원자력 설비에 포함됩니다.

「원자로」는 자체적인 연쇄반응으로 핵분열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핵분열 시킬수 있는 위험한 물질을 저장하는데 사용되거나 고안된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위험한재산」이란 방사성, 독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재산의 손실 및 신체장해에 관해서 신체장해나 손실이란 말은 재산의 모든 형태의 발생 가능 오염을 포함합니다

서기 2000 년 부담보 추가약관

1. 우리회사(이하 「회사」라합니다)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이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상기 1)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 으로부터 받은 어떠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 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상기 1), 2), 3)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1. 이 보험증권은 12 개월의 보험기간에 대한 계약으로써 발행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보험료는 다음의 분할별로 납입할 수 있음을 합의합니다.

(1) 2 회 분납

제 1 회 분납(50%)	: 년	월 일 계약체결시 최초납입
제 2 회 분납(50%)	: 년	월 일 납입

(2) 4 회 분납

제 1 회 분납(25%)	: 년	월 일 계약체결시 최초납입
제 2 회 분납(25%)	: 년	월 일 납입

이 번역본은 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제 3 회 분납(25%) : 년 월 일 납 입
제 4 회 분납(25%) : 년 월 일 납 입

그러나 이 특별약관은 다음조항을 추가하여 합의합니다.

매회 분납보험료가 상기 합의된 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할 경우 당 회사는 소정 보험료 납입기일부터 실제로 분납보험료가 납입된 때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여하한 손해도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 이 조항에 의거 납입된 분납보험료를 초과하는 이체가 발생할 경우, 미분납 보험료는 즉시 납입하여야 합니다.

전쟁과 테러 보장제의 특별약관

보험 또는 배서 조항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성격, 또는 기타 원인에 관계없이 테러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실, 손해, 비용을 보험이 제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전쟁, 침략, 외국 원수, 적대 행위 또는 호전적인 행위 (전쟁 선언 여부 무관), 남북 전쟁, 폭동, 혁명, 내란, 폭동, 민중폭동, 군사 또는 강탈행위,

2. 테러리즘의 행위.

이 배서조항의 목적을 위하여, 테러행위는 무력이나 폭력 및 / 또는 다른 사람 또는 그룹들로부터의 위협의 사용에 국한되지 않고 홀로 정치, 종교, 이념 또는 대중에게 위협을 가하고 정부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지닌 유사한 목적을 가진 어떠한 조직이나 정부에 연관되어 행동하는 모든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이 배서 조항은 또한 제어, 예방, 억제 또는 위의 1 번 2 번 조항과 관련하여서도 초래된 어떠한 자연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한 분실, 손상, 비용 또는 경비는 제외됩니다.

어떠한 손실, 손해, 비용 또는 경비가 이 보험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이 면책 조항을 근거로 언더라이터가 주장한다면, 이 반대규정의 부담은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배서조항의 일부가 무효 또는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나머지 규정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 번역본은 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사고협조조항

이 증권상의 상충되는 부분에 관계없이, 이 조건은 모든 보상책임에 다음과 같이 우선한다.

원수보험자는 보상 가능한 클레임을 야기할 수 있는 사고 발생을 인지하였을 경우 3 영업일 이내에 재보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수보험자는 재보험자에게 사고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손해사정인, 조사자, 기타 전문가들의 선정과 클레임의 협의, 조정 및 확정시에 재보험자와 협조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수보험자 단독으로 손해사정인, 조사자, 기타 전문가를 선정할 수 없다.

리딩재보험자는 원한다면 사고 협의, 조정 확정과 관련된 모든 회의에 참석하고 원수보험자로 부터 사고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을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

이 조항에 따라서 지정된 손해사정인, 조사자 또는 기타 전문가들은 원수보험자를 대신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모든 보수, 비용, 경비 및 기타 지불금은 모든 이해 당사자들간에 비례적으로 부담될 것이다.

재보험자가 각각의 사고에 대해서 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실패하는 것이 사고에 대한 이 권한을 포기하지 않는다.

계약상 가중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결과적 손해 보장제의 특별약관

이익상실, 매출손실, 매출감소, 사업기회의 상실, 데이터 손실, 예정된 예금 또는 이윤의 상실 등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 결과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이 번역본은 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파산관련 면책조항

보험자는 다음과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i) 피보험회사 또는 피보험자의 지급불능, 법정관리, 파산 또는 청산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하는 경우
 - (ii) 피보험회사 또는 피보험자의 채권의 매매 및 신용대출의 연장과 관련되어 부적절한 설명 또는 태만(부작위)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하는 경우
 - (iii) 피보험회사 또는 피보험자의 지급불능, 법정관리, 파산 또는 청산에 관련하여 피보험회사 또는 피보험자의 채권 또는 연장된 신용대출의 금전적 가치의 감소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하는 경우
 - (iv) 피보험회사 또는 피보험자의 채권자 및 채권 보유자에 의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이 증권의 다른 모든 조건 및 규정은 변동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부담보 특별약관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는 보상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에 관한 제반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재위반 부담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아래의제재에 반하는 위험의 보장, 보험금의 지급 또는 이익의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 ① UN 결의에 의한 제재, 금지, 제한사항
- ② EU, 영국 또는 미국의 무역·경제적제재조치 또는 법률규정

석면/ 곰팡이 위험 보장 제외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증권에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석면/곰팡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배상청구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 (1) 석면/곰팡이 또는 석면/곰팡이가 포함된 제품 또는 생산물의 흡입, 섭취, 물리적 노출
- (2) 어떤 제품, 제조물 또는 구조물을 건축이나 제조할 때 석면/곰팡이의 사용
- (3) 어떤 제품, 제조물 또는 구조물에서의 석면/곰팡이 제거
- (4) 석면/곰팡이 또는 석면/곰팡이가 포함된 제품 또는 제조물의 생산, 캡슐보호, 운송, 운영, 공급, 판매, 구매, 채광, 소비 또는 처분

든 성질의 손실, 피해, 비용 또는 경비는, 해당 손실에 대해 어떠한 다른 원인 또는 사건이 동시 다발적으로 혹은 어떠한 순서를 두고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유행병, 세계적 유행, 또는 감염병에 대한 통제, 모니터, 방지, 억제, 회복을 목적으로 한 어떠한 조치의 이행이나 그 이행의 실패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그로부터 유발되었거나, 귀결되었거나, 관련이 있는 모든 성질의 손실, 피해, 비용 또는 경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체취급 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 정한 단체를 제외한 5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하 "단체취급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한하여 적용합니다.

1. 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2. 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3종 단체

위 1,2종 단체 이외에 단체의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그러나 단순히 보험가입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상품다수구매자 단체

상품판매자가 자기의 관리하에 운영, 유지되는 상품구매자(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구매자를 말합니다) 다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100인 이상의 단체

제2조(계약자)

①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번역본은 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② 1조(계약의 적용범위)에 정한 단체의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다수 계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계약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대표계약자는 개별 계약자를 대리하여 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약관,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④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계약자는 다른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추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추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추가 또는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되며, 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염병 조항

1. 본 증권은 적용 가능한 모든 제조건 및 면책 사항에 따라 보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 또는 물리적 손상으로 인한 손실에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본 증권에 상에 반대되는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은 전염병 또는 전염병의 공포 또는 위협(실제 또는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기인하거나, 동시 다발적으로 혹은 어떠한 순서를 두고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실, 손해, 청구, 비용, 경비 또는 기타 금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번역본은 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② 1조(계약의 적용범위)에 정한 단체의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다수 계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계약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③ 대표계약자는 개별 계약자를 대리하여 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약관, 납입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을 대표계약자에게 교부합니다.

④ 위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계약자는 다른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추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추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추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추가 또는 교체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전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되며, 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피보험자 추가 또는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염병 조항

1. 본 증권은 적용 가능한 모든 제조건 및 면책 사항에 따라 보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 또는 물리적 손상으로 인한 손실에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본 증권에 상에 반대되는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은 전염병 또는 전염병의 공포 또는 위협(실제 또는 인지 여부에 관계없이)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거나, 기인하거나, 동시 다발적으로 혹은 어떠한 순서를 두고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실, 손해, 청구, 비용, 경비 또는 기타 금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번역본은 계약자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2. 본 조항의 목적상 손실, 손해, 청구, 비용, 경비 또는 기타 금액에는 아래에 대한 청소, 해독, 제거, 모니터링 또는 테스트 비용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1. 전염병 또는

2.2. 해당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보험목적물

3. 본 조항에 사용된 바와 같이, 전염병은 임의의 유기체로부터 다른 유기체로 임의의 물질 또는 제제에 의해 전염될 수 있는 임의의 질병을 의미합니다.

3.1 물질 또는 제제는 살아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또는 기타 유기체 또는 이들의 변이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3.2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달 방법은 공기 전달, 체액 전달, 임의의 표면 또는 물체, 고체, 액체 또는 기체 또는 유기체 사이의 전달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3.3 질병, 물질 또는 제제는 인류 건강 또는 인류 복지를 손상시키거나 위협할 수 있거나, 또는 보험목적물의 악화, 가치 손실, 시장성 또는 사용 손실을 유발하거나 위협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항은 모든 확장 담보, 추가 담보, 면책조항의 예외조항 및 기타 담보에 대해 일괄 적용됩니다.

그 외 모든 제조건 및 면책조항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